

시험의뢰서

(앞쪽)

접수번호	접수일	처리일	처리기간:	뒤쪽 참조
의뢰인	상호(명칭)		사업자등록번호	
	성명(대표자)		생년월일	
	주소(사무실)		(전화번호:)	
시험대상물의 명칭				
시험대상물 채취 장소				
시험대상물 채취 일시				
시험 의뢰 항목				
시험 의뢰 목적				
현지 출장 여부 []에 []아니요				

「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」 제3조제1항에 따라 시험을 의뢰합니다.

년 월 일

의뢰인 (서명 또는 인)

국립환경과학원장 귀하

첨부서류	1. 시험대상물 2. 시험대상물의 제조방법 및 제품의 특성 등 시험에 필요한 자료	수수료 「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」 별표에 따른 금액
------	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처리기간		
시험 분야(제2조)	처리기간	비고
1. 대기오염물질	14일	
2. 소음·진동	14일	
3. 산업폐수 및 가축분뇨	20일	
4. 하수·오수·분뇨	20일	
5. 상수원의 원수(原水)와 「먹는 물 관리법」에 따른 먹는물 및 먹는샘물등	20일	
6. 수처리제	20일	
7. 생활폐기물 및 사업장폐기물	20일	
8. 수은을 함유한 전지류	14일	
9. 토양오염물질 및 토양 중 잔류농약	14일	
10. 유독물시험	14일	
11. 인체 및 동식물의 중금속 함유량	14일	
13. 자동차의 배출가스 및 소음	14일	
15. 그 밖의 환경오염과 관련된 사항	20일	

※ 현장에서 시료를 채취하는 데에 걸리는 시간은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않습니다.

